

폐수배출시설 변경 [] 허가신청서
[] 신고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허가(신고)번호	제 호	접수일	처리기간	뒤쪽참조
신청인 (신고인)	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대 표 자			
	주 소 (전화번호:)			
	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설치개시 예정일		가동개시 예정일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비점오염원 신고대상	[] 해당(신고서 제출여부 []제출 [] 미제출) [] 해당없음			
	사업장 부지면적(㎡)			

[]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 본문, 제3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[]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 []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.	수수료(변경허가신청) 5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,000원)
------	--	--

작 성 방 법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제3항,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,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처리기간

- 변경허가 : 7일(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)
- 변경신고 : 5일 다만, 시설의 전부 폐업, 사업장의 명칭변경,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

처 리 절 차
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